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23
----------	-----

제 출 일 : 2025. 5. 30.

제 출 자 : 남양주시장

1. 제안이유

- 청년의 나이를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나이와 일치하도록 규정하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관련, 경기도 지급 방식 등 사업 개편 추진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년의 정의를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름 (안 제2조제1호)
-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을 ‘분기마다 남양주사랑상품권’에서 ‘분기마다’ 삭제 (안 제5조제1항)
- 그 밖의 청년기본소득 지급 관련 사항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기본계획을 따름 (안 제5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부서협의 결과

1) 협의결과

- 비용추계서(예산과)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성별영향평가(여성아동과) : 개선의견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관) : 원안동의
- 규제심사(의회법무과) : 규제심사 대상 아님

나. 입법예고 결과

- 1) 예고기간 : 2025. 3. 31. ~ 4. 20.(20일간)
- 2) 예고결과 : 의견없음

다. 관계법령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19세 이상 24세 이하의”를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분기마다 남양주사랑상품권”을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 ② 그 밖에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기본계획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 · 과		청년정책과
입안자	관 · 과장 직위 · 성명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팀장 직위 · 성명	청년지원팀장 전민경
	담당자 성명 · 전화	황주연 (031-590-8538)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u>19세 이상 24세 이하의</u> 사람을 말한다. 2. ~ 3. (생략) 4. “저소득 청년”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한다.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청년기본소득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u>분기마다 남양주사랑상품권</u>으로 지급한다. ② 청년기본소득은 지급대상자가 지급신청을 완료한 다음 <u>분기부터 매 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른 날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자에게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u>	제2조(정의) ----- -----. 1. “청년”이란 「<u>남양주시 청년기본 조례</u>」 제3조제1호에 따른 -----. 2. ~ 3.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 ----- -----<u>남양주사랑상품권</u>----- -----. ② 그 밖에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u>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u>」의 기본계획을 따른다.

우에는 해당 연도 총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
고 저소득 청년에 한정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정 수반 요인
 -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방식 변경(분기별 → 일시금)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 당초 24세 청년 1인당 100만원을 분기별로 지급하였고, 조례
개정 후에도 24세 청년 1인당 1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
는 사업으로 세출예산의 증감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로 대체 하고자 함

[참고] 기존 2025년 예산편성액 (계속사업)

총 사업비(천원)	도비(천원)	시비(천원)
8,134,000	5,693,800	2,440,200

4. 작성자 : 문화교육국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붙임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청년정책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2025A경기남양024)

1. 청년정책과-3423(2025. 3. 1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2025A경기남양024) 1부. 끝.

남 양 주 시 장

주무관	이연희	여성정책팀장	홍주희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복지국장	전결 2025. 3. 10. 양현모
협조자							
시행	여성아동과-8962	(2025. 3. 10.)	접수	청년정책과-3454	(2025. 3. 10.)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별관4층)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3965	팩스번호	031-590-2269	/ yhlee0127@korea.kr	/ 비공개(5)		

- 정약용의 상상을 깨우는 남양주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경기남양024			
정 책 명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부서명	청년정책과		
	담당자명	황주연	전화번호	031-590-8538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3월 10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청년정책과)	○ 청년의 나이를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나이와 일치하도록 규정 ○ 기존 분기별로 지급하던 청년 기본소득 지급 방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 ○ 저소득층 및 사회적, 자연적 재난 상황 등 특수한 경우에만 허용되었던 일시금 지급 방식은 모든 대상자에게 확대 적용하도록 개정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03월 10일 남양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연희/031-590-3965) 청년정책과장 귀하				

붙임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청년정책과장

(경유)

제목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2025-26)

청년정책과-3424(2025.3.10.)호와 관련하여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평가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관련 권고사항 반영 여부

■ 평 가 결 과 : **원안동의**

붙임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각 1부. 끝.

감 사 관

주무관	김주현	청렴윤리팀장	이정주	감사관	2025. 3. 12. 문경석
협조자					
시행	감사관-2795	(2025. 3. 12.)	접수	청년정책과-3618	(2025. 3. 12.)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4719	팩스번호	031-590-2079	/ sjh99006@korea.kr	/ 비공개(5)

- 정약용의 상상을 깨우는 남양주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 리 번 호	2025-남양주-26		
자 치 법 규 명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평 담 당 부 서	감사관	평 가 담 당 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김주현
입 안 부 서	청년정책과	입 안 담 당 자 직급 및 성명	행정9급 황주연
평 가 결 과 통 지 일	2025. 3. 12.		
통 보 내 역	원 안 동 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2025년 3월 12일 부패영향평가 평가담당 감사관 (담당자 / 연락처 : 김주현 / 031-590-4719) 청년정책과장 귀하			

붙임 4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결과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청년정책과장

(경유)

제목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1. 남양주시 청년정책과-3424()호와 관련됩니다.
2.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 해당 개정안은 우리 시 청년 등에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3.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규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끝.

의 회 법 무 과 장

주무관	조현기	규제개혁팀장	안재현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2025. 3. 11.
협조자						
시행	의회법무과-3082	(2025. 3. 11.)	접수	청년정책과-3498	(2025. 3. 11.)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7320	팩스번호	031-590-2900	/ hgj1235@korea.kr	/ 비공개(5)	

- 정약용의 상상을 깨우는 남양주 -

붙임 5 입법예고 결과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결과보고

1. 청년정책과-4397(2025. 3. 27.)호와 관련입니다.
2.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3. 31.(월) ~ 2025. 4. 20.(일)(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라.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 의견제출 0건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주무관	황주연	청년지원팀장	전민경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문화교육국장	전결 2025. 4. 21. 이형숙
협조자	의회법무팀장	김철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시행	청년정책과-5616			접수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8538	팩스번호	031-590-4227	/ juyeonh22@korea.kr	/	대국민 공개	

- 정약용의 상상을 깨우는 남양주 -